

## 2025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

### 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 신규과제 신청요강

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-R&D시스템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IRIS\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
- 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- ※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(매뉴얼) 자료 참조

2025. 4.

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 
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



## 문의절차 및 문의처

### □ 문의 절차

“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 
반드시 공고자료(공고문·신청요강·FAQ) 확인 후  
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

#### 문의 전 확인

공고문, 신청요강, FAQ를 반드시 읽어보세요.



#### 문의순서

(1차) 연구자 → 주관연구기관에 문의

(2차) 주관연구기관 → 한국연구재단에 문의



#### 공고자료 확인

공고문, 신청요강,  
FAQ 내용을 숙지



#### 주관연구기관에 먼저 문의

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 
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 
연구관리부서에 문의



#### 한국연구재단에 문의

추가적인 문의사항은  
산학협력단을 통해  
한국연구재단에 문의

### □ 신청 및 접수 시스템 관련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의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관련

- IRIS 콜센터 ☎ 1877-2041

- IRIS Q&A : IRIS 홈페이지>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사용문의 게시판

**※ IRIS시스템 장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불가합니다.**

### □ 사업 및 평가 관련 : 한국연구재단 문의

- 사업 관련: 사업 내용, 지원자격 등

-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☎ (042) 869-6619, 6622, 6623

- 평가 관련 : 선정평가 절차 · 방법 등

-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☎ (042) 869-내선번호 4자리

구분	자연과학단	생명과학단	의약학단	공학단	ICT·융합연구단
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 -비전임유형	6554	6538	6054	6545	6568

##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

- ① 2025년 학문후속세대지원(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-비전임유형) 신규 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	2025. 05. 19(월) 09:00 ~ <u>2025. 05. 28(수) 18:00</u>
주관연구기관 검토 · 승인기간	2025. 05. 19(월) 09:00 ~ 2025. 05. 30(금) 18:00
신청 절차	연구자 신청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- 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 (2025.05.28. 18:00)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
※ 신청마감일 1~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신청 기간 내 미접수시 별도 구제 불가

- ② ‘온라인신청매뉴얼’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 이므로,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**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을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**  
※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- ④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【 연구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】

※ 세부내용은 [별첨(매뉴얼)1-1] (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 운영단)) 및 [별첨(매뉴얼)1-2] (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) 참조)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  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 
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  
※ KRI 연구자정보 데이터의 정보이관 동의 후 최초 1회만 이관되므로, 이관 이후의 연구자 정보는 IRIS내 NRI를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[별첨 매뉴얼1-2. 03-2참고]  
※ KRI 연구자정보 이관 동의 후 익일에 NRI에 KRI정보가 반영됩니다. 연구자정보 이관 및 NRI 연구자정보 수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과제 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  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<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> ※ 세부내용은 [별첨(매뉴얼)1-3(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)] 참조
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  - \* <00대학교>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,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[연구기관] 템 [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] 항목에서 [지원인력추가]를 통해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 대표자를 <00대학교> 대표자로 등록 가능
  - 승인권한은 본교(00대학교) 및 산학협력단(00대학교 산학협력단)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
    - \*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 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 가능

▶ IRIS 문의처: [IRIS 콜센터\(1877-2041, 042-862-1500\)](#) 또는

[IRIS 홈페이지](#)>[알림·고객](#)>[시스템·서비스](#)>[문의](#)>[사용문의 게시판 활용](#)

# I 2025년 사업 개요

## 1 사업 목적 및 내용

### □ 지원근거

- 「학술진흥법」 제5조(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)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

### □ 사업목적

- 박사후연구원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성장하면서 혁신적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
## 2 지원 내용 및 선정 규모

구분	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
	비전임 유형
주관연구개발기관	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제30조에 준하는 학교(기관)
연구기간	3년
연구형태	개인연구
지원분야	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 (이공계 내 융합연구 포함)
연구비(간접비 포함)	연 100백만원 (간접비 5% 포함)
선정 과제수	152개 내외
연구 개시일	2025년 9월 1일
총 연구기간	2025.9.1. ~ 2028.8.31. (36개월)
1차년도 연구기간	2025.9.1. ~ 2026.2.28. (6개월) ※ 1차년도 연구비는 6개월분 지급

※ 지역대학(4대 과기원, POSTECH 제외)에 전체 선정과제 수의 40% 이상 배분 예정

## 3 2025년 추진 일정

일정	내용
2025. 05. 19.(월) ~ 2025. 05. 28.(수)	신규과제 연구책임자 접수
2025. 05. 19.(월) ~ 2025. 05. 30.(금)	주관연구기관 검토 · 승인기간
2025. 6월 ~ 8월 중	선정평가 실시
2025. 8월 중	교육부 종합심의위원회 심의
2025. 09. 01.	신규과제 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 II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

### 1 신청 및 참여자격

-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** : 고등교육법 제2조, 제30조에 준하는 학교
  - ※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그 밖에 다른 법률로 설립된 대학을 포함
- 연구책임자 자격**
  - (연구개시일 기준)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비전임교원(박사후연구원 포함)
    - ※ 정년퇴직자 신청대상 제외
    - ※ 대한민국 국적자 및 박사학위 취득자
    - ※ 연구개시일(2025.9.1.) 이전 고용이 예정된 비전임교원(박사후연구원 포함) 신청 가능

###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

※ 연구책임자가 신청제한 사항 위반 발견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

#### 【정부R&D 공통사항 적용】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여야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

####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

##### ▶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,

-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.
1.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  2.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  3.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  4.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, 제5조제1호·제2호의 사업,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 - 4의2.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 5.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
 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
    - 가.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
    - 나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 7.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

\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제3항제4호, 제7호에 따라 이 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(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)과 연평균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 신규과제('25년~과제 종료 시),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내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 및 장비 구축 과제(공동연구 활성화 과제는 3책5공 적용)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

## 【2025년도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적용】

- (기본 원칙)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

### \* 교육부·과기정통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

- ▶ 학술연구혁신지원(창의도전연구기반, 지역대학우수과학자, 보호연구, 학제간융합연구, 미래도전연구, 글로컬R&D), 학문후속세대지원(석사과정생, 박사과정생, 박사후국내·외연수, Post-Doc. 성장형 연구), 글로벌리더연구, 중견연구, 한우물파기 기초연구, 우수신진연구, 세종과학펠로우십(국내, 국외연수), 국가아젠다 기초연구, 생애기본(기본연구, 생애첫연구), 이공학개인기초(기본연구)

### 예 외

- ▶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

- (신규 신청 제한) 2025년도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  - 단, 기 신청한 사업의 선정결과가 확정되어 미선정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

- (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)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 단위 기초연구사업을 기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
  - 단,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최종 종료(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)될 경우 신청 가능

### **【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 신청 및 수행제한 사항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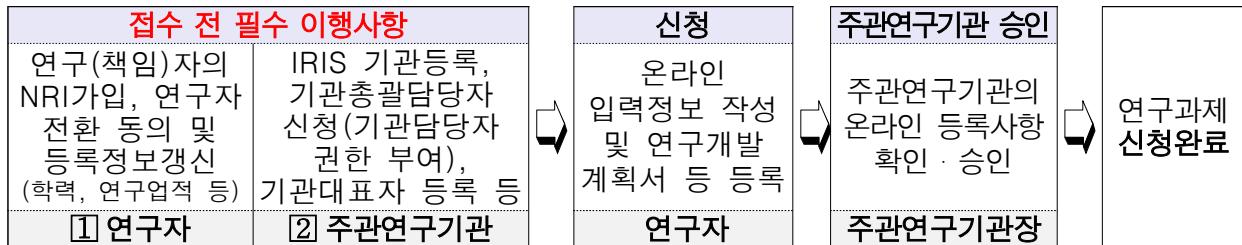
- 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유형 (공동연구, 단독연구 혹은 비전임유형),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
- 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의 공동연구원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 수행제한 사항 미적용  
단, 기존 Post-Doc. 성장형 공동연구의 공동연구원은 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

###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# 1 신청방법 및 절차

##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에 접속/로그인 →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등록 → 주관연구기관 확인 · 승인



- 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- ※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사용에 따라 기존 한국연구자정보(KRI) 내 등록된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<https://nri.iris.go.kr>)으로 이관 필수(별첨 매뉴얼 1-2.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메뉴얼 참고)

##### □ 접수 시 유의사항

-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[최종확인]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[제출]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
  - ※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,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, 반드시 다시 [최종확인]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[제출]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.
  - ※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
- 주관기관 승인기간 내에 “주관기관 승인” 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
  - ※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(소속기관에 문의)
-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
  -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([제출]버튼 클릭)되어야 함
-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(접수마감일 1일전 등)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
  - ※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, 별도 구제 절차는 없음

- 연구개발계획서 오류 발생 시 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신청 후 원본 다운로드, PDF 변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필수 확인
- 접수 마감 이후 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과제 수행이 불가한 경우 선정 이후 선정 포기 신청

## 2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

### 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및 접수	2025.05.19(월) 9:00 ~ 2025.05.28(수) 18:00:00
주관연구기관 검토	2025.05.19(월) 9:00 ~ 2025.05.30(금) 18:00:00
신청 절차	연구자 신청 ▷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#### <신청 관련 주의사항>

- ▶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“제출”처리 하여야 함.
- ▶ ②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에 “주관기관 승인”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  
- 따라서, 신청자는 주관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(주관기관 문의)
- ▶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(접수 마감일 1일전 등)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
-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, 별도 구제 절차는 없음

### □ 제출사항

- (1단계 : 온라인 입력) 기본정보, 과제요약정보,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정보, 연구비 내역, 주요연구수행실적(수행완료 과제, 수행(신청) 중 과제) 등
- (2단계 : 제출서류 업로드)
  - 연구계획서 분량 초과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불이익 가능/ 표지·참고문헌·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

제출서류 목록	비고
① 연구개발(연수)계획서(10페이지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(5건 이내)            ※논문, 특허,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          ※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</li> </ul>
②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	-
③ 박사학위 취득(예정)증명서	- 취득일자 포함된 증명서(예정자는 확인서 양식 제출)

\*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(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페이지 분량 제한에 미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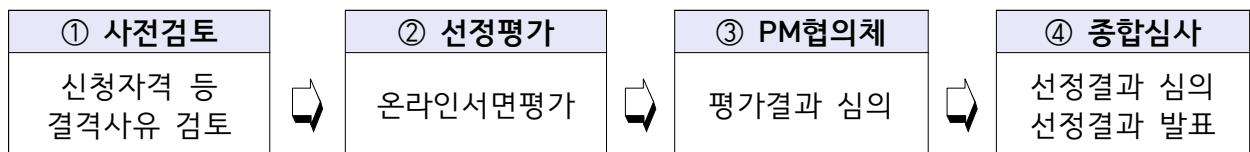
\* 선정 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확인 예정

\* 대표연구실적 작성 최대 건수를 초과할 경우, 첨부파일 내 작성 순서대로 5개만 인정됨

#### IV

## 선정절차 및 평가사항

### 1 평가절차 및 방법



※ 평가방법 등은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

### 2 평가항목 및 내용

#### 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 (비전임연구 유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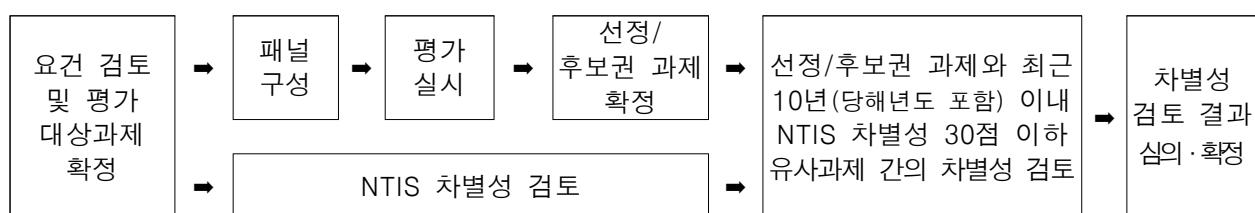
평가 항목	평가 내용
연구책임자의 역량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 등이 해당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가?</li> </ul>
연구내용의 혁신성 및 도전성 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안된 연구가 혁신적이며 도전적인가?</li> <li>- 연구 내용과 연구수행 계획은 타당하고 우수한가?</li> </ul>
연구역량 제고 및 경력 개발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수행을 통한 연구책임자의 역량 제고와 경력 개발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</li> <li>-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책임자의 역량 제고와 경력 개발의 효과가 높은가?</li> </ul>
연수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수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크고 질적 으로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</li> </ul>

※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## 3 차별성 검토

#### NTIS 차별성 검토

-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(필요시)전문가 활용한 차별성 검토
  -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,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·발전,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·지원
- 검토절차



## □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

- 2025년도 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(비전임유형)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교육부/과기정통부 최초 신규 접수된 연구계획서와 차별성 검토
   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,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·발전,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·지원
  - 검토 절차 : NTIS 차별성 검토절차 준용
- \* IRIS 과제 차별성 검토기능에 따라 신청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여부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## 1

##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

 관련규정

-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 및 『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』을 따름
-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, 평가방법 등은 변경 가능

 과제관리

- 연구책임자 신분변동\*(전임교원 임용 등)이 발생한 경우, 연구기간이 1/3 이상 경과하였다면 계속 수행 가능
  - \*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으로의 신분 변동
- 연구책임자가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·외 파견 시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

 연차보고서 제출

- 보고서 제출 :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전 30일이내 연차보고서 제출
- 연구수행 성과입력: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, 논문발표 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입력
  - ※ 관련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

## 2

## 협약해약(지원 중단) 사항

- 협약해약 : 협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, 과제중단에 따른 제재조치 가능
- 과제중단 :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,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하고 연구비 잔액 반납
  - 아래 기준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, 제재조치 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,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·확정함

구분		세부내용
신분변동	이직·취업	타 기관에 채용되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	퇴직	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(단, 징계 등의 사유 또는 본인 희망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인정)
	공직 등 임용	국공립·사립대학교 총장, 공공기관의 장(또는 임원) 및 공무원(국회의원, 장(차)관 등 정무직 포함)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되는 경우
	병역	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사망, 질병, 육아 등		홍수, 지진 등의 천재지변, 화재, 폭발, 폭동, 소요, 동원령 선포,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, 사망, 불구, 폐질, 장기입원, 질병휴직, 출산 및 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타 사업 선정		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현재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
기타	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※ 수행포기의 사유(불가피성) 및 시점(잔여 연구기간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
### 3 과제수행시 안내사항

- 연구기간 연장 : 연구책임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허용(2년 이내)
- 연구성과 등록 의무 :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
  - 연구수행 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, 특히 등록 등의 성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IRIS)에 수시 입력

**1 논문 사사표기 안내**

-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,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

- | 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문표기 : 본 연구성과는 0000년도 정부(교육부)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(No. 과제 번호 : IRIS 시스템에서 확인)</li> <li>▶ 영문표기 :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(grant number)</li> </ul> |
|--|

**2 국내·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**

- 연구책임자가 국내·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 
※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

**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**

-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\*을 의무 이수해야 함 (미이수시, 최종보고서 제출 불가)
  - \* [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] 혹은 [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]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
  - 교육운영 지정기관 :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, [www.kird.re.kr](http://www.kird.re.kr))
  - 교육신청 홈페이지 : <https://alpha-campus.kr>
  - 교육관련 문의전화 :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 네 (1588-5834)

**4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의무화**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<p>※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)</p>
--

-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
  -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    - ※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(심의결과서 및 심의 면제확인서 등)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
-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(※ 문의처 : 국가생명윤리정책원(02-737-8970))

## 5 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 · 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

- 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 · 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
  - 한국연구재단(NRF)에서 지원한 국가R&D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을 출원 · 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.
- 개인명의 지식재산권(특허 등) 등록에 의한 위반
  - 지식재산권 성과(특허 등)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&D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
- 지식재산권(특허 등)출원 · 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
  - 한국연구재단(NRF)에서 지원한 국가 R&D 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(특허 등)을 출원/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<sup>\*</sup>를 기재하여야 함
    - \* 과제고유번호, 부처명, 연구관리전문기관, 연구사업명, 연구과제명, 기여율, 주관기관, 연구기간
  - ※ 관련 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

## 6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

-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<sup>\*</sup>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(질병관리청 인체자원 분양데스크(분양대표전화 1661-9070))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

\* 인체유래물 : 혈청, 혈장, 소변, 혈액유래 DNA, LCL, LCL유래 DNA 등

##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

-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, 특허, 연구시설 ·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.

- 화합물의 경우, 연구성과 관리 · 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(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, 042-860-7190)에 기탁하여야 함

##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

-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,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 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,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

### 〈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〉

-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· 변조 ·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-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## 9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

-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「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.
- 시험·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<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>) 확인  
※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##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

-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(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) 및 가이드라인\*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.  
\*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(<https://www.labs.go.kr>)에서 관련 자료 참고

## 11 연구노트 작성 안내

-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·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
- ※ 관련 근거: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102호)

## 12 연구 윤리 관련 사항

-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하는 경우 ‘부실 학회·학술지 체크리스트’를 통한 주관 기관 점검 후 추진
-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\*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,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
  - \* 단순행정, 실험보조 등은 참여는 불가하며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,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
-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성희롱·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「교육공무원법」 또는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즉시 배제하고,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
- 전문기관에서는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 중단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조치  
※ 연구수행 전 협약 체결 시, ‘성희롱-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,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협약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게 됨’을 명시

## 13 적용 법령

-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항에 따라 『학술진흥법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』 등을 적용함  
(관련 규정 조회 : 국가법령정보센터, <http://law.go.kr>)

## 1 | 기본사항

## 1. 이공학분야(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)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?

- ☞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‘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(RB)’를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. 따라서,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 ‘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(Review Board) 분야 분류표\*’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하고,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.

\*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nrf.re.kr>) → 사업 안내 → 사업자료실 → 연구분야분류표 → 전문위원분야분류에서 확인 가능

## 2. 학문후속세대지원(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)은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?

- ☞ 3책5공이란,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(3책 5공)임을 뜻합니다.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 과제수의 제한)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. 본 신청과제도 3책 5공 대상 과제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.

## 3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?

- ☞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 제34조에 의해 ‘참여제한’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해당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.  
☞ 또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책임자는 지원 자격 상실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
## 4. 전문연구요원(병역특례)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?

- ☞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연구개시일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기간과 연구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## 5.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속 한국인도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까?

-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며, 연구책임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.

## 6. 계획서의 「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· 활용 동의서」는 학생연구원 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?

- 개인정보의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 등)이 계획서 상 참여연구자로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.(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 관리기관인 경우에도 학생연구자의 연구 수행 기여도 인정 및 보상을 위해 참여 과제에 참여연구자 등록 필요)

## 7.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?

- 정부 회계년도 일치 방침에 따라, 2025년도에 시작하는 당 사업의 경우 1차년도(2025년)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6개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구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비전임유형 신청 방법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
연구기간	2025.9.1~2026.2.28 (6개월)	2026.3.1~2027.2.28 (12개월)	2027.3.1~2028.2.29 (12개월)	2028.3.1~2028.8.31 (6개월)
연구비	50백만원	100백만원	100백만원	50백만원

## 8. 접수기간(연구자 신청 · 주관연구기관 승인)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?

-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,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.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의 경우,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9.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- 신청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, 연구개시일 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어야 합니다. 이 경우, 해당자는 연구개시일 전에

박사학위 취득이 최종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‘박사학위증명서’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, 미취득 또는 미제출자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.

- ☞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신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자정보(NRI) 상의 학위 정보를 박사학위 취득상태로 기재 후 취득기관은 취득예정기관으로, 졸업연월은 예정연월로 하면 됩니다.

#### 10. 2024년도 Post-Doc. 성장형 공동연구의 공동연구원이 2025년 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- ☞ 2024년도 Post-Doc. 성장형 공동연구의 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으로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#### 11. 현재 소속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☞ 현재 소속기관이 없거나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 제반 관리에 대한 사전 협의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

#### 12. Post-Doc. 성장형 연구지원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시일 이전에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제 협약이 가능한가요?

- ☞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을 포기하여야 합니다.

#### 13. 아직 등의 사유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연구의 계속 수행이 가능한가요?

- ☞ 연구책임자 신분변동(전임교원 임용 등)이 발생한 경우, 연구기간이 1/3 이상 경과하였다면 계속 수행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으로의 이직이어야 합니다. 공공·민간연구소 등으로 아직 혹은 타 신분변동이 발생할 시 과제 계속 수행 불가능합니다.

## 2 신청 전 확인사항

#### 1.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해도 되는지요?

- ☞ 동 사업은 신청과제의 차별성을 판단하고 있으니 과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)를 통하여

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.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3 | 연구비 계상

#### 1.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합니까?

-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」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. 기타 세부 계상/집행에 관한사항은 함께 공지되는 『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』 및 주관연구기관에 비치된 『연구비 관리매뉴얼』\*을 참고하십시오. 관련 문의는 1차적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하시고, 기타 세부적인 연구비계상/집행기준에 관한 문의는 연구정산총괄팀(042-869-7788)으로 하십시오.

\* 재단 홈페이지 → 사업안내 → 사업자료실 → 사업관리 규정 → [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] 및 [연구개발비 정산 길라잡이] 공지

### 4 | 과제 접수 유의사항

#### 1. 접수기간(연구자 접수 · 주관연구기관 승인)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?

-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,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. 주관연구기관 미승인 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.

#### 2. 첨부파일 제출 전 · 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?

- ① 손상된 파일,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한글 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IRIS로 접수 시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.
- ② 또한 접수 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,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※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

1.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,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.
2.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. (제목-HY헤드라인M, 본문-휴먼명조, 표-맑은고딕)
3.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.
4.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, 저장, 미리보기,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.
5.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-8로 인코딩한다.
6.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.
7. Word 파일의 경우,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.
8. 문서에 인쇄제한,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.

## 5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사용 관련

### 1.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?

☞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-R&D와 같은 역할을 하고,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 시스템(NRI)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(KRI)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전환 등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는 필수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.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[별첨(매뉴얼)1-1] (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) 및 [별첨(매뉴얼)1-2] (IRIS 회원 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)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2. (IRIS 관련) 대학의 경우,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‘대학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

☞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.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. ‘대학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,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을 진행·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접수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‘대학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‘산학협력단’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.

**3. (IRIS 관련)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,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?**

- ☞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. 한 명의 NRI 소속기관은 다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, 등록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과 NRI 소속기관이 동일한 인력만 해당 기관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정보를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의 대표자(예: A대학 홍OO, A대학산학협력단 김OO)와 2명의 기관총괄담당자(예: A대학 이OO, A대학산학협력단 박OO)가 필요합니다. 참고로, 기관총괄담당자가 아닌 기관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소속 기관 정보가 일치하는 담당자에게만 기관담당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**4.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?**

- ☞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,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. 다만,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(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사용문의)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